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. 8. 23 선고 2017가단112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]

전 문

원고1. A(개명 전 이름 B)

2. C

3. D

피고E

변론 종결2017. 8. 9.

판결 선고2017. 8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F 임야 523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4. 5. 4. 접수 제21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오승준

별지